

북미 미사일회담의 전망과 대책

박종환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북미 미사일회담은 제1단계로 북한 미사일의 중동 수출 금지를 위한 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계(MTCR) 가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제2단계로는 북한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 중단, 배치 조정, 생화학 무기 생산 중단 문제 등이 논의될 것이다. 우선 제1단계 미사일회담은 북한의 MTCR 가입 및 북한 미사일의 중동 수출 금지가 주된 안건이기 때문에, 한국의 직접적인 관심 사항은 아니다. 그러나 제2단계 미사일 회담의 경우, 한국의 안보적 이해 관계때문에 한국도 주요 관련국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내용책으로는 전역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대용 미사일 개발, 대북 협상 및 포괄적 군비 통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정치·심리적 인정 지침에서 최소한의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억지력 확보 및 대북 협상 카드 마련 차원에서 미사일 개발 전략을 실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사일 회담의 전전에 따라 남북한군사회담을 개최하여, 미사일의 배치 조정 및 폐기, 생화학 무기 생산 중단, 이에 대한 경증제제 확립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머리말

북 한 핵문제를 계기로 북한과 미국은 직접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였으며, 북미 제네바합의(1994. 10) 이후 양국 관계는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미국은 북미 관계 진

전의 조건으로 북한 인권 문제, 미사일 수출 문제, 미군 유해 송환, 테러 행위 금지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북한 핵문제의 해결 구도를 마련한 뒤, 대량 파괴 무기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다음 수순으로 북한 미사일의 수출 금지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대미 관계 진전에 최대의 우선 순위를 두고 이 일환으로 북미 미사일회담에 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미국과 북한간에 1차 미사일회담이 개최되었다. 미사일회담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 관계와 전략적 사항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기의 결실을 맺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다. 이 회담의 명칭은 미사일회담이지만 미사일의 수출 및 생산 중단 문제와 생화학 무기 문제도 같이 취급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2의 북미간 포괄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미 미사일회담은 일차적으로 세계 전략 차원의 문제이지만, 회담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안보 및 동북아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의 위협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사일회담의 진행에 촉각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고는 북미 미사일회담의 현황과 전망을 예상한 뒤,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 개발 현황

북한은 사정 거리 50 km에 이르는 Frog-5 로켓 및 170 밀리 자주포와 사정 거리 70 km에 달하는 Frog-7 로켓 및 240 밀리 방사포 등을 휴전선 인접 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이 실전 배치했거나 개발 중인 탑도 미사일은 다섯 종류이다. 첫째, 북한은 80년대 초 이집트로부터 스커드 B미사일을 도입한 후, 이를 개량하여 1986년 100% 독자 생산 단계에 도달했다.¹⁾ 스커드 B미사일은 사정 거리가 300 km이며 탄두는 1 톤이고 오차 범위는 0.5~1 km로 신뢰도가 낮다. 북한은 이란·이라크전 당시 이란에 스커드 B미사일 100여기를 판매하였다.

둘째, 북한은 1986년 스커드 B미사일의 동체를 확대하여 사거리리를 늘림으로써 스커드

C미사일을 개발하였다. 스커드 C의 사거리 는 0.5 톤의 탄두를 장착하면 600 km, 1 톤의 탄두를 장착하면 400 km이며, 오차 범위가 1~2 km로 신뢰도가 낮다.

셋째, 북한은 1988년 이후 로동1호 개발에 착수하여 1993년 5월 시험 발사에 성공하였 다. 로동1호의 사거리는 1 톤의 탄두를 장착 했을 경우 1,000 km로 알려져 있으나, 현재 500 km의 실험 발사만 했을 뿐이며, 오차 범 위는 2~4 km에 이른다.

넷째, 북한이 연구 개발 중인 대포동1호는 로동1호와 스커드 B미사일을 연결한 2단계 미사일로 1 톤 탄두를 탑재하면 사거리가 2,000 km이다. 대포동2호는 중국의 DF3로 켓과 로동1호를 연결한 것으로, 1 톤 탄두에 사거리가 4,000 km가 되도록 개발하고 있다. 북한이 15 년 내에 대포동1호 및 대포동2호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기 힘들 것이며, 특히 대포동1호 및 대포동2호가 정확성을 가지려 면 관성 유도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²⁾

북한의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특이한 것은 중동 국가와의 관계를 통해서 기술을 도입하고 완제품·부품·기술을 판매하는 과정을 겪었다는 점이다. 북한은 이집트로부터 미사일 개발 기술을 도입하였으며, 이를 발전시켜 이란, 시리아 등 중동 국가에 판매하여 기술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렇게 개발된 기술을 다시 수출하는 싸이클을 밟아왔다. 중동 지역의 오일 달러와 복잡한 지역 역학 관

1)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1995, p. 60.

2) 미국가정보위원회(NIC)의 리차드 쿠퍼 의장은 1996년 2월 28일 美하원 국가안보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사정 거리 2,000 km의 대포동 미사일을 개발 중에 있으나, 15 년 내에 美 본토를 사정권에 포함하는 ICBM을 개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앙일보」, 1996년 3월 1일.

계로 인한 군비 경쟁의 필요성이 북한의 미사일 개발 목표와 결합되어 미사일 개발이 추진된 것이다.³⁾

그런데 한국의 국토가 작기 때문에 한국 전체 지역이 스커드 미사일의 사정 거리에 포함되고, 사정 거리 1,000 km인 로동1호는 일본 열도까지 사정 거리에 포함시킨다. 그러나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대단히 낮기 때문에, 탄두가 목표 지점에서 수 km씩 벗어날 가능성 이 크다. 미사일이 군사 목표를 공격할 경우, 오차 반경이 50 m 이내이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은 군사적으로는 효과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에 핵무기나 화학 무기를 탑재하여 인구 밀집 지역을 공격 할 경우 테러 무기로서 파급 효과가 크다.⁴⁾

한편, 북한은 60년대부터 생화학 무기의 개발, 방호, 탐지 장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1961년 인민무력부 총참모부에 핵·화학 방위국이 창설된 이래, 북한의 화학·생물 전력이 증강되었다. 핵·화학방위국 산하에는 총괄지도부와 7 개 부서가 있으며, 그외에도 지도부가 관할하는 55연구소, 710연구소, 398연구소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생물 무기에 대한 연구는 김일성의과대학,

김만유기념병원 방사선연구실, 201연구소, 501세균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⁵⁾ 현재 북한은 수포성, 신경성, 출혈성, 최루성 등 다양한 유독 가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화학 작용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8 개의 화학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⁶⁾

미사일회담의 현황

베를린에서 개최된 1차 미사일협상(1996. 4. 20~21)은 철저한 보안 속에 진행되었으며, 비교적 순조로운 출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핵 협상때와 달리 미사일회담에는 한국 및 일본의 실무진이 파견되지 않았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와 달리 미사일회담이 세계 전략적 문제이며, 우선적인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는 북한 미사일의 수출 문제가 동북아 질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차 미사일회담은 비교적 실무적 차원에서 실질적인 협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차 미사일협상이 끝난 뒤, 아이흔 美 수석대표는 “이번 회담이 좋은 시작이었으며, 대화를 계속할 계획이다”라고 함으로써 일단 출발이 순조롭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⁷⁾

1차 미사일회담은 회담의 성격, 의제, 추후

3) 문성복,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실태”, 「한반도 군비통제 12」, 1993. 12, pp. 167~170.

4) Dietrich Schroeder, “핵화산과 미사일 방어 체계: 한국의 사례”, 1996년 5월 10일, 동아일보사 통일연구소,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한국정보통신주식회사 공동 주최 학술회의 발표 논문, pp. 2~4.

5) 문성복, “화학무기대국 북한”, 「한반도군비통제 15」, 1994. 12, pp. 252~254.

6)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백서 1995-1996」, pp. 62~63; U. S. Department of Defence, *Proliferation: Threat and Response*, April 1996, p. 7.

일정 등을 둘러싸고 양측의 입장을 타진한 일종의 탐색전이었다. 첫째, 회담 성격과 관련하여 미국은 미사일 문제를 대량 파괴 무기 확산 금지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위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북미간 군사 접촉 통로 확보 및 대미 관계 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임하였다. 이러한 양국의 기본적 입장 차이는 미국측 수석 대표가 비핵산 및 군비통제 전문가인 로버트 아인혼(Robert Einhorn) 국무부 부차관보인 반면, 북한측 대표는 대미 외교 전문가인 이형철 외교부 미주국장인 점에서 잘 나타난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생산·수출과 생화학 무기 생산 중단 문제를 대량 파괴 무

기 통제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미국은 북미 제네바합의에 의해 북한 핵동결이 유지됨으로써 북한의 핵무기 개발 억제에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대량 파괴 무기 통제의 다음 수순으로 미사일의 수출·개발과 생화학 무기 생산을 통제하고자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이란과 시리아에 수출함으로써 중동 평화를 위협해왔다.⁸⁾ 미국내 親이스라엘 세력이 북한 미사일의 중동 수출을 문제시함에 따라 대통령 선거를 앞둔 클린턴은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희망하고 있다.

북한은 북한의 미사일이 공격용이 아니라 주한 미군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자위 수단임을 강조하였다. 북한은 4월 18일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미사일 개발은 “자주권에 속하는 문제이며, 한미측의 시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미사일회담은 우리를 무장 해제시켜 손쉽게 압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⁹⁾ 이러한 이유로 북한은 북미간 평화 협정 체결을 통해 북한의 안보 위협 요인이 제거되어야만 미사일통제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둘째, 의제와 관련하여 미국은 미사일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술·부품·완제품의 수출 금지뿐만 아니라,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 중지, 생화학 무기 생산 중단 등의 문제도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니고 있다.¹⁰⁾ 반면, 북한은 미사일회담에서 북한체제의 안전 보장, 북미평화협정 체결, 주한 미군의 미사

7) 「한국일보」, 1996년 4월 22일.

8) 미국은 특히 중동 국가들의 미사일 획득이 이스라엘의 안보에 미칠 영향을 염려하고 있다. 미국은 1996년 4월 28일 이스라엘과 ‘미사일방어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겨냥한 모든 미사일 공격에 대해 미국이 인공위성을 통해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새 레이저 방어 무기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였다. 「세계일보」, 1996년 5월 4일.

9) 「로동신문」, 1996년 4월 18일.

10) 원스톤 로드 美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국무부 차관보는 1996년 3월 19일 美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행한 증언에서, 북한 핵동결 이후 북한에 대한 미국의 주요 관심이 북한의 전방 배치된 재래식 군사력과 미사일, 생화학 무기라고 밝혔다. *Testimony of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Ambassador Winston Lord, House Committee on International Relations, Subcommittee on Asia and The Pacific, March 19, 1996*; 미국과 한국은 4월 8일 워싱턴에서 실무협의를 통해 미사일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의 수출뿐만 아니라, 미사일의 개발 및 배치, 생화학 무기의 생산 중단 문제까지 논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일보」, 1996년 4월 20일.

일 철거, 주한 미군의 역할 변경,¹¹⁾ 군사회담 정례화 등 포괄적인 군사·안보 문제들을 일괄 타결하고자 하고 있다.

셋째, 앞으로 미사일회담은 몇단계에 걸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 협상상에서와 같이 중간 합의문을 도출하고 그후 추후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 또는 고위급을 개최하고 그 산하에 안건별로 세부 위원회를 두어서 몇개의 실무 회담이 동시 병행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북한은 미사일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 한반도 평화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북미고위급회담의 필요성을 주장함으로써, 미사일협상을 북미평화협정 체결 및 북미 관계 개선과 일괄 타결하고자 할 수도 있다.

미사일회담의 전망

1단계: 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과 미사일 수출 금지

앞으로 미사일회담이 몇단계로 나뉘어 진행될 경우, 1단계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수출 금지를 위한 북한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

11) 이종혁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은 4월 29일 美조지아대 세미나에서 한미동맹체제 하에서 주한 미군이 대북 억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남한의 군대를 분리시키는 평화 유지자 역할을 하는 데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1996년 5월 1일.

12) 이재욱, “MTCR의 실상과 한국의 대응 방안”, 「주간 국방논단」, 제567호, 1995. 6, pp. 2~3.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MTCR) 가입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 수출이 중동 평화를 불안하게 하며, 미사일의 세계적 확산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미사일 수출 금지를 위해서 MTCR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MTCR은 서방 선진 7 개국에 의해 1987년 출범한 것으로 1996년 현재 28 개국이 가입하였으며, 대량 파괴 무기의 개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관련 기술 및 장치의 제3국 이전을 통제하자는 것이다. 통제 대상 미사일은 핵과 화생 무기의 운반이 가능한 적재 중량 500 kg, 사정 거리 300 km 이상의 미사일 체계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MTCR은 비공식적인 국제 조약으로 이행 및 제재 장치가 결여되어 있으며, 이를 감독·운영하는 국제 기구도 없다. 또한 기본 원칙들이 명확하게 성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의도했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¹²⁾

북한이 MTCR에 가입할 경우, 사정 거리 300 km인 스커드 B 및 C미사일의 완제품·부품·기술의 중동 수출이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북한이 MTCR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실제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이행을 보장하기는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자위권을 내세워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수출 및 기술 개발을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막

대한 반대 급부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을 이란과 시리아에 수출하여 부족한 경화와 원유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수출 중단에 대해서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할 것이다.

미국이 우선적으로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반대 급부는 의회의 승인이나 관련 법의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의 독자적 명령으로 실행할 수 있는 대북 경제 제재 해제 조치들이다. 여기에는 美 해외현지법인의 대북 투자 허용, 대북 수출 허용 품목 확대, 선박 및 전세기의 북한 입국 허용, 美 은행을 통한 송금 허용, 美 여행자의 북한내 신용카드 사용 허용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중동 수출에 대해 직접적 이해 관계를 지니고 있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북한에 제공될 반대 급부를 부담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은 1992년 10월부터 1993년 상반기까지 북한의 로동1호 미사일의 중동 판매 금지를 조건으로 운산금광을 3억 달러에 매입하는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¹³⁾

2단계: 북한 미사일의 생산 중단 및 배치 조정, 생화학 무기의 생산 중단

2단계 미사일회담에서는 북한 미사일의 개

발 및 생산 중단, 배치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그런데 MTCR은 미사일의 기술 및 장비의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독자적 기술에 의한 미사일 개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의 개발 및 생산 중단, 전진 배치된 미사일의 후방 배치 등을 위해서는 MTCR의 규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내용의 「북미합의문」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미 협상에 의해 「북미제네바합의문」이 채택됨으로써 북한이 핵동결 및 핵시설 해체 등 IAEA 핵안전협정보다 훨씬 강력한 내용을 수용한 것과 같은 양상이 될 것이다.

미국이 북한 미사일의 생산 중단 및 배치 문제를 거론할 경우, 북한은 이에 대응해서 주한 미군에 배치된 미사일의 철수, 주한 미군의 역할 조정 및 단계적 감축, 한미방위조약의 성격 변화, 군비 통제 등을 일괄 논의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2단계 미사일회담은 사실상 포괄적 군사 회담의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2단계 미사일협상에서는 북한의 생물 및 화학 무기의 생산 중단이 논의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생물무기협약(Biological Weapons Convention: BWC)¹⁴⁾에는 가입하였으나, 화학무기협약(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¹⁵⁾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CWC 가입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13) "The North Korean Connection," Time, 1993. 6.

그런데 화학무기협약은 검증 문제, 엄청난 운영 비용, 구체적인 제재 조치 결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 CWC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화학 무기 생산 중단 및 기존 무기의 폐기를 실현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¹⁶⁾

前 북한 외교관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외교부는 1993년 초 국제 사회에 유화적 제스처를 보낼 필요성이 있으며, 실제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이행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CWC 가입을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인민부력부의 반대로 북한의 CWC 가입은 부산되었다고 한다.¹⁷⁾

2단계 미사일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의 생산 중단 문제가 논의될 경우, 일본과 한국의 비

용 부담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일본 열도를 사정 거리 내에 포함하는 북한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대북 수교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 미사일의 개발 중지 대가에 대해 남한의 공동 부담을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미국 본토를 사정 거리에 포함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려 할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대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생화학 무기 생산 중단도 이에 상응하는 막대한 반대 급부가 요구될 것이다.

북한으로부터 미사일의 개발 중단 및 배치 조정, 생화학 무기 생산 중단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은 美 기업의 직접 투자 협용, 대북 교역에 대한 수출 신용 제공, 미국내 북한 자산 동결 해제, 테러리스트 국가에서 제외,¹⁸⁾ 죄해국 대우 제공 등을 고려할 것이다.¹⁹⁾ 그리고 미국은 IMF, IBRD, ADB 등 국제 금융 기구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지원하고 이를 기관으로부터의 대북 차관을 지원할 것이다.

그리고 북미 제네바 합의의 대가로 경수로 2기가 제공된 것과 마찬가지로 미사일회담의

14) 생물 무기의 개발·생산·비축·획득·보유의 금지를 목표로 하는 생물무기협약(BWC)의 원명칭은 「생물 및 독소 무기의 개발, 저장 금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ohibition of the Development and Stocking of Bacteriological and Toxin Weapon)이다. BWC는 1969년 낙순美대통령의 생물 무기 일방적 폐기 선언 이후, 1972년 유엔 총회의 결의로 성립되어 1975년 발효되었으며, 현재 133 개국이 가입하였다. 한국은 1987년 생물무기협약에 가입하였으며, 북한도 1987년에 가입하였다. 송운수, “대량 폭파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다국적 수출통제체제의 동향과 전망”, 「한반도군 비통제」, 10집, 1993, p. 47, 각주 10 참조.

15) CWC는 모든 화학 무기의 개발·생산·보유·이전·비축·사용을 금지하는 협약으로 1993년 1월 서명식이 개최되어 1994년 7월 현재 154 개국이 서명하였으며, 1996년 후반기에 발효될 예정이다. 한국은 1992년 유엔 총회에서 화학무기협약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였으며, 1993년 1월 동안 MTCR의 실상과 한국의 대응 방안²⁰⁾, p. 3. 각주 6 참조.

16) 흥규덕,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체결의 의미와 우리의 대응”, 「전략논총」, 제5집, 1995, pp. 166 ~169.

17) 북한의 CWC 가입을 건의했던 최수현 외교부 부장은 이 문제로 인해 1년 동안 ‘혁명화’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 현성일 前 북한 외교관의 인터뷰, 1996년 5월 23일.

진전에 대한 대가로 국제 컨소시엄 방식을 통한 대북 지원이 추진될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 컨소시엄에 의한 대북 지원과 관련하여 가급적 참여 국가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모든 협상을 미국과 진행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사안별로 남한이 다자간 대북 지원 방식에 참여할 경우 북한은 남북한간 직접 접촉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할 것이다.

한국의 대책

미사일회담이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한국이 참여할 사안에 대한 손익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우선 1단계 미사일회담은 북한의 MTCR 가입 및 북한 미사일의 중동 수출 금지가 주된 안건이기 때문에 한국의 직접적 관심 사항

이 아니다. 북한 미사일의 중동 수출은 대량 폭파 무기의 세계적 확산 방지 및 중동 평화에 관련된 세계 전략 차원의 문제로 한반도 안보 및 남북 관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따라서 북한 미사일의 수출 금지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참여할 여지나 그럴 필요는 없다. 북한 미사일의 수출 금지에 대한 대가는 세계 전략 차원에서 이 문제에 임하고 있는 미국과 북한 미사일 수출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이스라엘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2단계 미사일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의 생산 및 배치 문제, 생화학 무기 생산 중단 문제 등이 논의될 경우, 한국도 주요 관련국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대응 미사일 개발, 대북 협상 및 포괄적 군비 통제 등의 방안이 있다.

전역미사일방어체제(Theater Missile Defense: TMD)²⁰⁾ 구축

북한의 미사일에 대해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하여, 걸프전으로 널리 알려진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같은 4 가지 유형의 미사일요격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 美 육군의 PAC-2(GEM)는 걸프전 당시 사용된 패트리어트의 개량형이며, 스커드 B미사일 요격용인데 스커드 C미사일에 대응한 성능을 일부 갖추고 있으며, 현재 배치되어 있다. 美 해군의 Aegis 공중방위시스템은 특히, 항

18) 美국무부는 4월 30일 '테러 지원 국가 명단'에 쿠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수단, 시리아 등과 함께 북한을 포함시켰다. 북한은 KAL기 폭파 사건 후인 1988년 2월 美국무부에 의해 테러국으로 지정되었다. 이후 북한이 테러를 지원한 사실은 없으나, 일본 요도가 납치범인 적군파에 은신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유로 1996년에도 테러국으로 분류되었다. 「한국일보」, 1996년 5월 2일.

19) 미국의 대북 제재 조치의 현황과 해제 전망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Zachary S. Davis, Larry A. Niksch, Larry Q. Nowels, et al., *Korea: Procedural and Jurisdictional Questions Regarding Possible Normalization of Relations With North Korea*, Washington D.C.: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November 29, 1994, pp. 21~36.

공기와 크루즈 미사일을 대상으로 현재 개선 중에 있다. 美 육군의 PAC-3(ERINT)는 1997년 말까지 실험 대상이며, 배치 여부는 그 다음에 결정될 것이다. 美 육군의 전역고도방위체제(Theater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도 현재까지 실패작이다. 이러한 미사일방어시스템은 개량 전역미사일 방위체계로 장거리 스커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1,000 km 이상 미사일에 대응하는 PAC-3나 THAAD의 효능이 불확실하며, 개발 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다.

그런데 전역미사일방어체제의 낮은 효과 및 막대한 비용, 북한 미사일의 낮은 정확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은 상당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첫째, 전역미사일방어체계의 주요 목적은 美 대륙에 대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좁은 지역에서의 지역 방어체계에는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탄도탄 요격 미사일(ATBM)이나 전역미사일방위체제(TMD)로 대도시를 완벽하게 방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효율성에 비해

막대한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셋째, 북한 미사일의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이를 과대 평가하여 전역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북한의 로동1호는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 대기 압력에 의해 서 재진입 운반체가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인다. 이처럼 계속 방향을 바꾸는 부정확한 미사일을 계속 추적하고 요격하기 위해서는 요격 미사일이 높은 축면 가속도를 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교한 수준의 요격 미사일을 개발하기란 쉽지 않다. 오히려 걸프전에서 입증된 비와 같이 재래식 탄두와 화학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에 대비해서 적절한 사전 경고를 하거나 강화된 콘크리트 건축을 건설함으로써 피해를 줄일 수 있다.²¹⁾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는 방어 수단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는 있다.²²⁾ 그런데 미국의 주도 하에 TMD 구상이 구체화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한국의 참여는 북한의 위협 전력, 비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소 한도의 범위에 그쳐야 하며, 이와 함께 전반적인 방공체계 현대화와 중장기적인 전력 증강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²³⁾

대응 미사일 개발 전략

미사일방어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한다는 것

20) TMD(Theater Missile Defense)는 경계 위성 및 공중 경보기(AWACS)가 공격 미사일의 방향, 속도 등에 관한 정보를 지상분석센터에 전달하고 이에 의해 통신 위성이 요격 지령을 미사일 부대에 전달하여 공격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요격에는 THADD, 개량형 패트리어트, 호크미사일 등이 동원된다. 미국은 SDI 계획이 중단된 후 1991년부터 TMD를 추진하고 있다. 문성목, “북한의 미사일 개발 실태”, 「한반도군비통제」 12, 1993. 12, pp. 177~178.

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오히려 억제력으로 대응 미사일을 개발하는 방안이 있다. 남북한 군비 통제 과정에서 북한의 전략 무기에 대응하여 협상할 수 있는 협상 카드 마련을 위해서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아울러 동북아 다자 안보 질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지역 안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군사적 위상을 위해서도 중장기적으로 미사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그런데 한국은 1979년 “사거리 180 km, 탄두 중량 500 kg 이상의 어떠한 로켓시스템도 개발하거나 획득할 수 없다”라는 「한미 지대지 미사일 각서」를 수락함으로써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MTCR체제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니이키 헤큘리스(Nike-Hercules) 지대공 미사일을 NHK-1 지대지 미사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미국은 1979년 한국과 「한미 미사일 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사거리 180 km 이상 미사일의 개발을 제한했다.²⁴⁾

1990년 한국이 NHK-1보다 장거리인

NHK-2 미사일을 개발하려 하자, 이를 우려한 미국은 「한미 미사일 각서」의 준수를 재강조하였다. 그리고 한국은 180 km의 사거리 제한 규정을 검증하기 위해 미국측의 NHK-2 연료 탱크 사찰을 허용하고 우주선(space launch vehicles)을 개발하지 않기로 약속하였다. 한국측은 NHK-2의 최고 사정 거리가 180 km라고 주장하였으나, 미국측은 기술적 조정을 통해서 260 km까지 사거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믿었다. 미국은 한국이 사거리 300 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할 경우, 장거리 미사일 관련 기술 수출을 규제한 MTCR 규정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개발 저지를 어렵게 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²⁵⁾

현재 한국은 「한미 미사일 각서」를 조정하는 한편, MTCR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은 1995년 10월부터 MTCR 규정에 입각한 미사일 관련 부품 및 기술의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하였다. 한국이 「한미 지대지 미사일 각서」의 내용을 수정하고 MTCR에 가입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은, 국제적 비핵산체제 가입으로 인한 국제적 신뢰감 획득, 회원국간의 기술 협력, 기술 협력 대상국의 다변화 등이다. 아울러 한국은

21) David Wright and Timur Kadyshev, "The North Korean Missile Program: How Advanced Is It?", *Arms Control Today*, Vol. 24, NO. 3, April 1994, p. 12.

22) Dietrich Schroeer, 「핵확산과 미사일방어체계: 한국의 사례」, pp. 4~8.

23) 이정민, “동북아 TMD체제에 관한 연구: 가능성과 쟁점”, 「전략논총」, 제5집, 1995. 7, pp. 229~291.

24) 이러한 배경 하에 추진된 NHK-1 계획에 의해 한국은 1994년 사거리 180 km의 지대지 미사일 「현무」 개발에 성공하였으며, 현재 이를 수십기 실전 배치하고 있다. 김민석, “미사일기술통제제도(MTCR)와 한국의 입장”, 「한반도군비통제」 14, 1994. 8, pp. 113~117; 「동아일보」, 1996년 5월 10일.

한미 합의에 의해서 규제되고 있는 우주선을 개발할 수도 있다. 그러나 민수·군수 겸용인 이중 사용 품목의 수출 장애로 인한 관련 산업의 기반 약화, 비회원국으로부터 미사일 및 우주 관련 산업의 기술 및 장비 도입 제약, 관련 기술의 수출 제약 등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있다.²⁶⁾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MTCR 가입을 통해 평화적 목적의 우주 산업 진출 및 북한 미사일에 대한 대응 미사일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1996년 6월 10일부터 11일 까지 서울에서 ‘대량 파괴 무기 비확산정책 협의회’를 가졌다. 여기에서 한국과 미국은 「한미 미사일 각서」의 수정 및 한국의 MTCR 가입에 대해서 합의하고, 관련 규정의 정비와 세부 후속 조치에 대해 추후 협의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북미 미사일회담의 후속 일정, 생화학 무기 통제를 위한 호주그룹에 대한 한국의 가입 문제, 한국의 CWC 비준 문제, MTCR 규정에 따른 로켓 엔진, 비행 계기, 방공 전자 장비, 미사일 컴퓨터 등 이중 용도 용품의 이전 통제 등에 대한 협의

25) 1995년 11월 27~30일 동안 위성년에서 개최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한국측이 한미 미사일 각서 폐기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미국측은 처음에 이 문제를 일축했으나,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다.

“U.S., Seoul to Continue Talks On Future of Missile Accord,” *Arms Control Today*, Vol. 25, No. 10, December 1995\January 1996, p. 25.

26) 이재숙, “MRCR의 실상과 한국의 대응 방안”, 「주간 국방논단」, 제567호, 1995. 6, pp. 10~13.

가 있었다.²⁷⁾ 그런데 MTCR이 원래 미사일의 수출 규제만을 목표로 한 것이지만, 미국은 MTCR 신규 가입국에게 중량 500 kg - 사거리 300 km 이상의 미사일 보유를 금지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MTCR에 가입하더라도 탄도 중량 500 kg - 사거리 300 km 이상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대북 협상 및 포괄적 군비 통제 협상

대북 협상 및 외교적 노력을 통해 미사일 생산 중단 및 배치 문제에 대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는 방안이 있다. 미국은 대북 협상을 통해 핵문제의 해결 구도를 마련한 것과 같이 대북 참여화 정책 및 접촉 확대를 통해 북한의 MTCR 가입과 미사일 생산 중단, 생화학 무기 생산 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한국의 대부분이 사정 거리에 포함되는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과 일본이 사정 거리에 포함되는 로동1호의 생산 중지 및 배치 조정 문제는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성급한 참여는 과도한 반대 급부 부담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비용 부담은 중동 국가와 일본, 미국의 참여를 전제로 한 공동 부담 형태가

27) 「중앙일보」, 1996년 6월 12일.

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이 미사일 및 생화학 무기를 개발하게 된 기본 동기를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미사일협상과 병행하여 남북한간 포괄적 군비통제협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한간 포괄적 군비통제 협상에서는 군인사의 교류·정보 교환·군사 훈련 통보 등 군사적 신뢰 구축 방안과 전진 배치 병력의 후방 이동, 배치 제한 지역 설정 등의 운용적 군비 통제 및 구조적 군비 통제가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²⁸⁾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생화학 무기가 더욱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미사일회담에서 북한의 CWC 가입이 추진되어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CWC에 가입한다고 하더라도 검증 및 제제 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 등 남북한군사회담을 통해서 북한 생화학 무기의 폐기 및 검증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북미제네바합의문」에 의해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 구도와 북미 관계의 포괄적 해결 구도가 마련된 이후, 북미 미사일회담에 의해 제2의 북미간 포괄적 회담이 진행되고 있다.

28) 남북한간 포괄적 군비 통제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박종철, 「남북한군비통제의 포괄적 이행 방안: 북미 관계 및 남북 관계 개선 관련」, 민족통일연구원, 1995.

미사일회담의 일차적 의제는 북한 미사일의 중동 수출 중지이기 때문에 한국이 이 문제에 직접 관여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미사일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의 생산 중단, 배치 조정, 생화학 무기 생산 중단 문제 등이 논의될 경우, 여기에는 한국의 안보적 이해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미사일회담의 진전 추이에 따라 한국의 참여 및 남북한군사회담 개최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응 방법으로는 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축, 대응 미사일 개발, 대북 협상 및 포괄적 군비 통제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전역미사일방어체제에는 비용이 많이 들며 확실한 방어가 보장되지는 않지만, 정치·심리적 안정 효과를 지니고 있다. 그리고 대응 미사일 개발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 확보 및 군비 통제시 협상 카드를 마련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군비 증강을 초래한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정치·심리적 안정 차원에서 최소한의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억지력 확보 및 대북 협상 카드 마련 차원에서 미사일 개발 전략을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미사일회담의 진전에 따라 남북한군사회담을 개최하여 미사일의 배치 조정 및 폐기, 생화학 무기 생산 중단, 이에 대한 검증 체제 확립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62)